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24 선고 2020가단1308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3. 3.

판결 선고2021. 3. 2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30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,947,1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7,947,1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윤아

별지